
	규정	문서번호	TWP-A501
		제정일자	1996. 05. 14.
	학생 준수 규정	개정일자	2018. 02. 19.
		개정번호	4

목 차

- 제1장 총칙
- 제2장 학생단체와 승인
- 제3장 총학생회 활동과 제한
- 제4장 전공의 자치활동
- 제5장 체육활동
- 제6장 상벌사항
- 제7장 보칙
- 부칙
- 별첨

작성부서	교무학생처	제정일자	1996. 05. 14.
------	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

구 분	작 성	검 토			승 인
		기획예산처장	교무학생처장	교무학생처장	
직 책	담 당				총 장
서 명					
일 자					

	규정	문서번호	TWP-A501
		제정일자	1996. 05. 14.
	학생 준수 규정	개정일자	2018. 02. 19.
		개정번호	4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 학생의 건전하고 유익한 대학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의 인격을 고양하고 학생 자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2012.5.25>

제2조(학생의 의무) 학생은 동원대학교(이하 “이 대학교”라 한다)의 건학이념을 성실하게 이행하며, 이 대학교의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.<개정2012.5.25>

제3조(학생증) 이 대학교에 입학(복학, 재입학, 편입학 포함)한 학생은 학생증을 교부 받아 항상 지참하여야 한다.<개정2012.5.25>

제2장 학생단체와 승인

제4조(학생단체의 허가) ① 이 대학교의 학생단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며 그 활동내용에 대하여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<개정2012.5.25>

1. 총학생회<개정2012.5.25>
2. 체육단체<개정2012.5.25>
3. 신앙 활동 및 그 연구를 위한 단체<개정2012.5.25>
4. 학술연구, 학습, 교양 및 취미와 정서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

② 제1항 각 호의 학생단체는 그 본래의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없다.<개정2012.5.25>


제5조(지도위원) 총장은 학생활동의 건전한 육성과 지도, 감독을 위하여 지도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.<개정2012.5.25>

제6조(단체 활동의 중지) 총장은 학생단체의 활동 내용이 제2조를 위반할 때에는 그 단체의 활동을 유보할 수 있다.<개정2012.5.25>

제3장 총학생회 활동과 제한

제7조(집회의 허가) ①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모든 집회는 집회 개최 7일 전에 교무학생처에 신고하여야 한다.<개정2012.5.25., 2018.02.19.>

② 집회가 정치활동 또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대학교의 운영에 간섭하는 것일 때에는 위원

	규정		문서번호	TWP-A501
			제정일자	1996. 05. 14.
	학생 준수 규정		개정일자	2018. 02. 19.
			개정번호	4

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.<개정2012.5.25>

제8조(게시 등) ① 현수막, 광고물 또는 인쇄물 등(이하 “인쇄물 등”이라 한다)을 게시, 부착 또는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와 해당 인쇄물 등을 교무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2.5.25., 2018.02.19.>

② 현수막 등의 내용이 정치활동 또는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 또는 이 대학교의 운영에 간섭하는 것일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시, 부착 또는 배포를 금지하거나 지도위원으로 하여금 지도·감독하게 할 수 있다.<개정2012.5.25>

제9조(간행물) ① 총학생회가 발간하고자 하는 간행물은 발간 1개월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전계획서와 원고를 교무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2012.5.25., 2018.02.19.>

② 간행물의 내용이 정치적 활동 또는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이거나 이 대학교의 운영에 간섭하는 것일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행을 금지하거나 지도위원으로 하여금 지도·감독하게 할 수 있다.<개정2012.5.25>

제4장 전공의 자치활동

제10조(전공활동의 방법) 각 전공에서 실시하는 활동은 사전에 소속 학과장의 지도·감독을 받아야 한다.<개정2012.5.25>


제11조(전공대표) ① 각 전공 대표는 학년별 선거를 실시하여 선출할 수 있다.<개정 2012.5.25>

② 선출된 전공 대표는 그 전공을 대표하며, 필요에 따라 부대표와 총무 등 약간 명의 임원을 둘 수 있다.<개정2012.5.25>

제12조(전공 행사) 전공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전공 대표가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.<개정2012.5.25>

제13조(행사의 참석) 교내외의 전공 행사에 소속 학과장 또는 학생복지운영위원 중 1명 이상이 참석하여 행사의 진행을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<개정2012.5.25>

제14조(전공 간행물과 게시) ① 전공의 필요에 의하여 발행하고자 하는 간행물과 게시공고물에 대하여는 소속 학과장의 사전 검토를 받아 발행 또는 게시한다.<개정2012.5.25>

	규정	문서번호	TWP-A501
		제정일자	1996. 05. 14.
	학생 준수 규정	개정일자	2018. 02. 19.
		개정번호	4

② 학과장은 게시 장소와 배포 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.<개정2012.5.25>

제5장 체육활동

제15조(운동경기의 참가) 이 대학교의 학생으로서 대외 운동경기에 참석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학생처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.<개정2012.5.25., 2018.02.19.>

제16조(경기의 참가 제한) ① 시험기간 중에는 각종 체육활동에 참가할 수 없다. 다만, 국제경기나 국가적인 행사로서의 운동경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개정2012.5.25>

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
제17조(단체동원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생을 동원할 수 있다.<개정2012.5.25>

1. 이 대학교 선수가 참가한 전국 선수권대회<개정2012.5.25>
2. 전국체육대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
3. 국제경기 또는 국가적인 행사
4.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<개정2012.5.25>

제18조(체육단체의 허가) 삭제


제6장 상벌사항

제19조(표창) 학생단체가 이 대학교의 건학이념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건전한 학생활동으로 그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.<개정2012.5.25>

제20조(학생회와 간부 처벌) <삭제2012.5.25>

제21조(장학신분 중지) 학생단체의 간부가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차기 학기의 장학생이 될 수 없다.<개정2012.5.25>

제22조(학생 생활점검) ① 대학 생활에 필요한 학생출결상황의 올바른 계도를 위하여 생활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.<개정2012.5.25>

	규정		문서번호	TWP-A501
			제정일자	1996. 05. 14.
	학생 준수 규정		개정일자	2018. 02. 19.
			개정번호	4

② 학생생활에 대한 기본적 점검 사항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학생상담 지도 기록지에 의하며 총장이 따로 정한다.<개정2012.5.25>

③ 학생 생활 지도결과는 교무학생처장과 그 학부모에 통보하고 성적의 10% 범위 내에서 반영할 수 있다.<개정2012.5.25., 2018.02.19.>

제7장 보칙

제23조(개인활동 금지) 이 대학교의 학생이 교내외에서 이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광고물 또는 인쇄물의 배포, 게시, 부착을 금지한다.<개정2012.5.25>

제24조(보칙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.<개정2012.5.25>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6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	규정		문서번호	TWP-A501
			제정일자	1996. 05. 14.
	학생 준수 규정		개정일자	2018. 02. 19.
			개정번호	4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별첨

[별지 제1호 서식] 집회 신고서

[별지 제2호 서식] 부차 신청서

[별지 제3호 서식] 간행물 발간 계획서

[별지 제4호 서식] 운동경기 참가 신청서

[별지 제5호 서식] 학생 상담 지도 기록지 - 교수용

[별지 제3호 서식]<개정2012.5.25>

간행물 발간 계획서

단체명 :

결	담 당	처 장	총 장
재			

월 일	간 행 물 명	내 용	예 상 면	예 산 액	비 고

[별지 제4호 서식]<개정2012.5.25>

운동경기 참가 신청서

결 재	담 당	처 장	총 장

월 일	성 명	운 동 종 목	비 고

[별지 제5호 서식]<개정2012.5.25>

학생 상담 지도 기록지 - 교수용

상담일 : 20 년 월 일 요일

일련번호 :

학번		이름	
----	--	----	--

■ 상담지도내용

■ 장기 결석 및 미복학생 상담 지도 내용

■ 조치결과

※ 자체 해결이 힘들 때 학교생활지원센터 상담실 의뢰
(학생용 학생 상담 지도 기록지 첨부)